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어떠한 이유로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철회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3. 27.

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- 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- 2. 근 거 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,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유○옥	1986.05.22.	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(중단)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,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(중단)함	취업지원서비스 종료 (중단)	폐문부재	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4. 3. 27. ~ 2024. 4. 11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이현수(031-646-10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